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경남 ○○ ○○○○ 조성사업 관리업무 등 추진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舊 산업자원부)에서 2007. 4. 30. ○○ ○○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공고를 함에 따라, 2007. 7. 25. 경상남도지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목리 반동리 일대(1,259,890㎡)에 경남 ○○ ○○ 조성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11. 13. 예비사업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선정되었으며, ○○개발연구원(○○○)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8. 12. 29. 7,000억원(국비560, 지방비2,100, 민자4,340) 투입하여 로봇전시관, 테마파크 등 설립하는 최종사업자로 확정되었다.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계	'09~'19	7,000억(공공2,660, 민간4,340)	1,259,890㎡(38만평)
1단계	'09~'18	3,660억 -공공: 2,660(국560, 도1,000, 시1,100) -민간: 1,000	공공: R&D센터, 로봇전시관, 및 경기장, 로봇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기반시설 민간: 로봇테마파크
2단계	'17~'19	3,340억(민간)	민간: 호텔, 콘도 등

이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산업진흥재단과 ○○○○○(주)컨소시엄은 경남 ○○ ○○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1. 4. 11.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체결 후, ○○○○○(주)컨소시엄에 부도로 인하여 2015. 9. 23. ○○○○컨소시엄과 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전체 공정을 8%이며, 기반시설인 토목공사 경우는 공정을 20%로 추진중에 있다.

특수목적법인(당초)	지분율	특수목적법인(변경)	지분율
• ○○○건설(주)	53.697%	• (주)○○건설 • (주)○○건설 • (주)○○○○ • (주)○○○○	25.000% 8.700% 4.997% 15.000%
• ○○○○(주) • ○○개발(주) • ○○건설(주) • (주)○○○건설	8.386% 5.031% 4.193% 4.193%	• ○○○○(주) • ○○개발(주) • ○○건설(주) • (주)○○○건설	8.386% 5.031% 4.193% 4.193%
• ○○증권(주)	5.000%	• ○○증권(주)	5.000%
• (재)○○○○○○○재단 (경남도출자출현기관)	19.500%	• (재)○○○○○○○재단 (경남도출자출현기관)	19.500%

1. 실시협약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선정 등) 용역 등 관리 소홀

「경남 ○○ ○○ ○○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1조에 따르면, 경상남도과 창원시장은 “갑”이라 칭하고, ○○○○○○○○재단을 ‘을’이라 칭하고, ○○○○ ○○콘소시엄(현, ○○○○컨소시엄)을 ”병”이라 칭하고

제3조에 따르면,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전문 감리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업자 등 관련법규에 따라 ○○○○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설계,시공)를 위하여 ‘갑’이 선정하고, ‘을’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 따르면, ‘갑’의 업무범위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사 감독, 공정의 관리감독,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준공검사,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과 감독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인허가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제31조에 따르면, ‘병’을 구성하는 회사들은 ○○○○ 사업 조성공사 중 공공부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민간부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특수목적 법인으로부터 각각 도급 받아 시공하되, ‘갑’이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에 따르면, 설계감리 및 공사 책임감리에 대해 ‘갑’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실시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실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과(舊, ○○○○사업단)에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7,811백만원)을 발주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등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해 계약심의회를 심사의뢰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산업과(舊, ○○○○사업단)에서는 실시협약 제3조, 제5조, 제47조에 따라 전체적인 ○○○○드 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해야 할 책임감리 선정을 ○○○○○○○○재단이 선정토록 부당하게 추진(2011. 9. 21., 2011. 10. 19.)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8조에 따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계약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시협약에 따라 ○○○○○○○○재단으로 위임한 사항이라며 계약심의회 심의 받지 않았으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동 협약 제5조등에 따라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관리가 필요함에도, 실시협약의 위임조항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를 통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舊, 남해안 ○○실 ○○○○단('08.0.0, 11명) → ○○○○과(현 ○○○○○과, 2012. 1. 1., 2명)

2.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가 중 자문비를 해외출장 경비 사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실비 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추가업무 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등을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업관리 용역으로 입찰공고(조달청 용역공고 제 2011-11-11785-01호) 한 사업이고, 특수한 공법 등 없음에도, 자문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경남 ○○ ○○○○ 조성사업은 알반적인 용역사업임에도, 책임 건설사업관리자(○○○)는 2016. 11. 12.부터 2016. 11. 20.까지 해외 선진 테마파크 및 콘텐츠 등을 참관을 목적으로 ○○ ○○○ 견학(특별한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님)하였으며, 그 출장비용을 부적절하게 설계용역 자문비에서 5,966,1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 조성공사의 설계 내역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기준 (2013년 20%이상 등)에 변경됨에 따라 도로포장재 중 기층 30,798ton 변경 적용 하여야 함에도, 미적용하여 588,858천원 상당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임목과쇄가 현장여건상 연속 시공됨에 따라 불 필요(13,690천원)하고, 가설 사무실 부지내 불필요한 주차 캐피노 설치(38,000천원), 성토부와 절토부 보강토 옹벽의 강연선 15.2mm를 강봉 29mm로 조정(644,200천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697,740천원 에 예산이 절감됨에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동 조성사업 설계내역에 총 1,286,598천원 상당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 ① 기반시설 등 특수목적 법인(공공, 민간)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 ○○ ○○○○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등 관리·감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자문비를 책임 건설사업관리자가 출장비로 사용한 5,966천원을 회수 조치하고
- ③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준수 등 과다 설계된 1,286,598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